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09. 3. 10
개정 2016. 4. 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9.]

제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4.29.]

제2조(위원회의 의결)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서면의결) ①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

었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즉시 위원들에게 알리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참석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전문위원회 출석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정 안전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회의록)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참석자 및 토의·의결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원 협의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의를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위원을 대상으로 민간위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기획·제도, 위해정보교환·긴급대응, 화학물질, 미생물, 신식품 전문위원회 등 5개 분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회의) ①분야별 전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미리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합동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회의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규정 준용)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3조(예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예산·문서·회계·물품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무총리실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타) 이 세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9.3.10>

이 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29.>

이 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의결내용 可(○), 否(×)	의결이유 또는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인(서명)

식품안전정책위원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